

부생연료유1호(하이신) 판매 Guide

□ 목 적

부생연료유1호(하이신)의 판매 및 사용 용도 제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 위함.

□ 판매 관련 (근거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)

- 수평거래금지 : 부생연료유판매소, 일반대리점, 주유소, 용제대리점 등에 판매 불가함. 반드시 실사용자에게 판매 하여야 함.
(단 폐유정제유 품질개선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폐유정제공장으로 판매 가능: 부생연료유2호는 판매 불가능 함)
- 취급제품 제한: 부생연료유판매소는 부생연료유만 취급 및 판매하여야함
(B-A 취급 및 판매를 위해서는 "일반대리점"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)

□ 사용 용도 관련

(근거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, 대기환경보전법, 청정연료사용에 관한 고시,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)

- 상업 및 산업용 노(爐)와 보일러 연료로 만 사용
(가정용 보일러 사용 안됨: 위치 및 사용목적 기준)
- 모든 내연기관용으로 사용하면 안됨 (2011년 1월부터 강화)
(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로 제한 했으나 모든 내연기관으로 확대 됨)

□ 환경 관련 (근거: 대기환경보전법, 청정연료사용에 관한 고시)

- 경유(황함유 기준 0.1% 이하) 및 부생연료유1호, 정제연료유(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의거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)는 전국에 사용 가능 -사용 제한 없음